

제427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30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상정된 안건

- | | |
|---|---|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 2 |
|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 2 |
|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57) | 2 |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 2 |
|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 2 |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임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번에 이어서 산불특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특별법 5건의 내용 중에 산림청 소관 위주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산림청 임상섭 청장, 행안부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 기획재정부 천재호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국토교통부 정우진 정책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업정책관직무대리,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 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이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 2.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 3.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70)

(10시06분)

○소위원장 임미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세 권의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먼저 소위 심사 참고자료로 돼 있는 것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심사 참고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차 법안심사소위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6건을 논의하셨는데 그중에 아래 하단에 보면,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6건 중에서 추모사업에 대해서 추모기념관 건립을 추가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문구를 정리한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오늘 추가로 논의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에서 추모기념관 건립을 추모사업에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견에 보시면 3호와 4호에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정부의견으로 되어 있는 4항에 보면—추가로 논의될 사항인데—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논의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고 산림청 소관 법안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보고받으신 대로 지난번에 추모시설과 관련된 문구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형수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님의 안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16쪽입니다—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부 측 의견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래 의원님 두 분의 안에는 사업으로 ‘추모공원의 조성, 추모비의 건립’ 이 2개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른 법안의 사례에 비추어서,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서 이달희 위원님 의견 주신 게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재난 대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네 가지 사업 꼽지를 더 추가하는 것을 요청하셨고 정부의견에 소위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다’ 이것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황충연** 여기서 추모기념관 건립과 추모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4항입니다. 17페이지의 4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법안 규정을, 여기 보면 정부안은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간명하게 가자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박형수 의원님과 이만희 의원님 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토부의 의견과 다르다는 겁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예.

○**서천호 위원** 29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4항입니다. 4항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특례를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국토부 반대의견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에 추모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 부분은 다른 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를 왜 반대하는지……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법으로도 ‘추모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별법으로도 가능하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세월호피해지원법, 소위 또 다른 재난과 비교해서……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재난과 차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법률을 갖다 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논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지금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에 이 부분은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정책관 정우진입니다.

지난 직전 소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 입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법에 따라서 추모시설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차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사전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전문가들의 검토를 한번 받아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지자체가 원하는 입지에다 아무 데나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사 빠진다고 해도 설치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전에 있던 다른 입법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것을 차이를 둔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여튼 저희도 조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산불 피해가 이런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텐데 이럴 때마다 또 특별법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추모시설들이 그린벨트 내에 많이 입지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검토는 거쳐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삭제를…… 앞으로 향후에 특별법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한번쯤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첫째,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이 많아질 거다,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법은 안 만들어져도 기후위기에 따른 괴물 산불이나 이런 게 날 때는 이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따라서 이런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자체가 원하는 아무 데나, 지자체가 아무 데나 안 합니다. 지금 산불 난 데가 여덟 개 시군이고 도도 세 군데나 겹쳐 있는데 조정의 역할은 필요한데 지자체가 하고 싶은 장소가 가장 주민이 원하는 곳입니다. 국토부가 가지는 이 시각은 정말 현장에 가면…… 어떻게 지자체가 아무 데나 합니까? 이런 시각을 중앙정부가 버리지 않으면 이 특별법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국토부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나 마찬가지로 이달희 위원님의 지적처럼 지자체가 추모시설을 건립할 때는 사실 가장 적합한 곳의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늘 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의 역량을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가 사실은 좀 도를 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토부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냥 정부 의견대로 가더라도 추모관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진 않으니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개발제한구역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 한 열 분 정도를 모셔 가지고 입지도 물론 보고요. 그다음에 설사 그 입지에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짚어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게 사업에 있어서 크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이런 무의미한 행정절차를 계속 이렇게 턱걸이를 걸 것 같으면 일반법에 그냥 맡겨 놔도 됩니다. 특별법을 하는 이유는 규제나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좀 내려보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그런 경우지 지역에 권한을 준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데나 막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특례를 달라는 게 이번에 이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유사 입법례에도 여러 차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치 유무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법에도 원안대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저희는 그래도 반대 입장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저희가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무의미하다고 또 말씀을 주시니까 참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난처합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아마 지난번에도 나오셔 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 주셨는데 국회에 오셔 가지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예가 부적합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의 규모나 크기로 보면 지금 사회적 재난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재해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의 규모나 크기에 비하면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행정에 계셨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또 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법에서 시그널을, 이거를 적극적으로 특별법으로 만든 그 취지를 담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느슨해진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저희 위원회가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했던 방식대로 동의 내지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거는 의원님들의 원안대로 문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견이 혹시 위원님들 내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 측에서 조금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래 주십시오. 국토부장관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아, 맞네요. 어저께 청문회를 했군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위원님들께서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심사하실 사항은 산림청 담당 사업 위주로 열 꼭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심사자료에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나와 있는 의견도 같이 별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개를 동시에 같이 보시면서 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1번으로 표시돼 있는 겁니다.

이 건은 정부의견으로 돼 있는 것 1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수행사망자의 특례 인정에 관한 것인데요. 소위 심사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초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불진화·인명구조·구난행위에서 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자 4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산불진화와 관련해서 돌아가셨는데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할 것을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 4명이 이미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입법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삭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이미 다 공무수행자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굳이 이 법안에 담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달희 위원** 아니, 되었으니까 법에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국토부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많은 산불이 발생할 거라는데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이거는 이미 특별법에 이번 재해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어서요.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나와 계신 분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예.

○**소위원장 임미애** 의견 주시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입니다.

지금 저희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산불 진화 업무는 위험직무로 규정이 되

어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니시면서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수령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공무수행사망자로 순직을 인정하도록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바로 다 순직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이 모두 다 순직으로 처리가 됐고 더 이상 해 드릴 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어떤 보상, 어떤 순직 처리가 된……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위험직무순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보상금 일시금 2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이미 다루어진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어떻습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황충연 두 번째는 소위 심사자료 10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견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인데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님 안에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여기 법률에서 면적을 이렇게 딱 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적합한 수준을 검토해서 넣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법률에 넣어 버리면 저희들이 향후에 할 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핵심은 대통령령에 이 법안을 발의한 분의 취지가 충분하게 담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현행 기준보다는 충분히 완화를 시킬 거고요. 그런데 여기 법률안에 제시된 이 면적 기준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는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에다가 숫자를 핀스해서 넣는 것은 좀 어렵고 대통령령 할 때 완화된 기준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42조 1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해서 재량을 또 두었어요. 그렇다면 이 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1항 조문에 ‘타당성 평가 적지 판정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적용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고 대통령령에 그 판정 기준이라든지 타당성, 조성 면적 기준을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도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문구 조정 한번 해 보시겠어요?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적용한다’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황충연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위 자료 122페이지이고 정부의견으로는 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산불폐기물 처리·복구 비용에 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소위 자료 122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의원님들 안은 세 가지입니다. 산불폐기물 처리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복구 비용, 이 3건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하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정부안은 산불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과 같이 5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삭제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한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현재도 폐기물 자체에 대한 처리는 100%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복구·건설 비용 지원인데요.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된 결과는 기준 50%가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신규로 지을 때는 국고에서 한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50%, 좀 더 이롭게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적으로 국가 부담이고 책무냐에 대한 부분은 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처럼 50%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데요? 지금 이번에 불난 곳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 불이 나서 복구하는 전체 비용은 얼마예요? 얼만데 이렇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아직 세부적으로 내역을…… 개략적인 금액은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나 자료가 나와 봐야 전체 규모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재정적인 지원을 5 대 5로 한다는데 이 부분은 산불이 나서 긴급하게 투자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복구해야 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긴급히…… 사실 많이 드는 돈이 아닙니다. 정말 정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거니까 이것은 국고로 빨리 반드시 지원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완성해서 빨리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국고보조율이 50%이니 이 50% 기준을, 다른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한마디, 한말씀……

○**소위원장 임미애** 예.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시설은 지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방시설에 대해서 국고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환경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구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비 부분도 제가 알고 있던 재난특교로 아마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부담이 크지 않은 문제이고 폐기물시설 말고 다른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가지고 폐기물시설만 100% 준다는 것은 국고 재정적,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지금 논의되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는 산불폐기물 처리 비용 지금 100%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법안에 포함을 시키든 안 시키든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데 정부 측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서천호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폐기물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할 수 없다는 것 그 입장이지요, 환경부 국장님? 그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일상적인 상황 같으면 그 논리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토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라는 것은 세상의 누구나 다 지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지 않은 위험이나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우리 법률로 규정할 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 특별한 재난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법을 적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원칙을 자꾸 내세워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논의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아니, 일반이 아니라……

○**서천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장비의 지방에서 50% 부담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100% 부담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70% 이상이나 일정 부분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이 피해를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니까. 복구시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사 중인 건축물 복구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양보를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운영·관리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50%,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50% 부담하는 부분을 국고에서 70% 부담을 해 주든지 해서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환경부 국장님?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재해라는 게 산불만 있는 게 아니고 수해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퍼센트를 건드리면 수해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별법에서 취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 법화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결국……

○서천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풍해도 올 수 있고 수해가 올 수도 또 다른 사회적 재난도 올 수 있고 또 다른 산불, 재해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정해서 지금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피해도 보면 일상적인 피해가 아니잖아요. 해방 후의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데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또 지금 어떤 재난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러시아에서 8.7 지진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에 안 와야 되지만 그것도 그냥 막연히, 정책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 복구하는 부분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그 원칙을 똑같이, 형평성 맞추자? 그렇게 하면 이 논의의 장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특별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지방정부에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자산으로 저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 복구를 빨리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0%, 80% 정도는 국가 부담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급하고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재난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 피해에서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지방비 매칭의 기준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폐기물처리시설 복구에만 전액 국고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같은 산불 피해지만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시설마다 좀 다른데요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지방 관리 시설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금 더 높여서 이것 산불의 경우는, 특히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전체에서 보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높여 달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 법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전체 일반법에서 가능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법이 전혀 필요 없지요. 그리고 아까 환경부 국장님 말씀이 수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응급복구·긴급복구, 이런 데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뜻하지 않은 피해 이런 것은 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특히 산불 난 곳에 가장 시급한 게, 여러분들 산불 난 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현장에 다 가 보셨습니까? 그 많은 쓰레기, 다 탄 것 뒷정리는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병원 앰뷸런스 불러도 되는데 119를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도 응급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불 난 데는 산불폐기물 처리 부터 빨리 다 해야 일상으로, 새로 집을 짓든지 농사를 짓든지 할 수 있거든요. 수해 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수해 난 지역 쓰레기 치우러 가 보셨어요? 그 쓰레기 안 치우고는 집에도 갈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응급한 데는 특별법에 넣어서 하고 다음에 이런 응급 일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같이 해야지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같으면 이런 논쟁이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데에 작은 예산이 드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 조항과 관련돼서 복구해야 할 시설이 어느 정도이고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몇 군데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오셨더라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오셨더라면 저희가 판단하기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 측의 고민 지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여한 저희 야당이나 여당의 위원님들은 다들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피해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 대해서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저번에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발표했을 때 보시면 알지만 피해주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 폭, 대폭 해서 지원을 해 드린 거고요. 이것은 지금 공공시설이고 지자체하고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행안부 재난특교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1000억 이상 따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그건 또 분리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추가로 비용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특별교부세를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되 추가로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큰 재난이 왔을 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지난번 산불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에만 중앙정부에서 14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2개 시설이 청송하고 영덕 2개소인데요. 이게 한 57억 원 정도 금액이고요. 사실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아까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특별법으로 처리하면 또 다른 재난이 나오면 거기도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뭔가 지원 포션을 늘리려고 하는 식으로 되면……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만약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룰을 개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에서 크게 돈을 지원 안 하려고,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특별법이 재난·안전 기본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난·안전 기본법을 행안위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이 특별법에서는 재난·안전 기본법에 준해서 법안 처리를 하면 어떨까, 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지금 정부 측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 보면 기본법의 법체계를 흔든다고 말씀하시는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법이라는 부분은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위험이나 피해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정한 법체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모든 재난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대 산불이라는 이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특별법을 마련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시법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예상되는 모든 재난에 똑같이 이렇게 특별법을 또 제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한 재난에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법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겁니다. 빠른 시한 내에 회복을 시키자, 일상을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큰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기본법을 개정해서 피해 복구를 한다 하는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는데 그 부분은 만약 그렇다면, 법에 담아 놓고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다면 문제가 오히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선언적으로 이 법에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 지원이 됐다면 이 조문을 가지고 더 시비할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서…… 일반법 얘기하시고 또 발생되지 않은 재난을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또 형평성 문제를, 발생되지 않은 위험을 가지고 지금 발생된 재난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미래의 위험을 지금 현재 발생한 위험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다, 법체계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게 논리

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문을 보면 39조 1항에—이달희 의원안입니다—이달희 위원님은 또 다른 생각,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전액’이라는 부분을 빼시더라도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고 3항에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정부 측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제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조문이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액’을 빼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아니요, 정부 측 의견은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가 되고요, 거기 정부 측 의견대로. 그 대신 그 외에 이달희 의원님 안 3항을 기준과 절차, 그러니까 ‘복구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그게 아니고 39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를 그냥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자는 말씀 아니신가요?

○서천호 위원 지금 100%를 지원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전액’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 어쨌든 논의되는 부분들이 속기록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과 절차, 범위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서천호 위원님 안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이달희 의원님 안의 39조 1항에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전액’은 빼고요.

○박정현 위원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본법에 준해서 그 틀을 훌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법안을 성사시키자 이러시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탈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구성된 취지도 일반법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위가 구성됐고 특별법이 제출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는 산불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공사 중인 폐기물시설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소위원장 임미애 ‘전액’ 자를 빼고.

○전문위원 황충연 예, ‘전액’은 빼고.

○이달희 위원 지원하여야 한다, ‘전액’만 빼고.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조의 전체 내용에, 1항은 같고요, ‘전액’ 자만 빠지는 겁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항이 2항으로,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황충연** 예,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2항은 삭제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임미애** 예.

○**전문위원 황충연** 다음, 네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자료 124페이지이고 정부의견 4페이지입니다.

위험목 제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대형산불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을 할 때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산림 소유자에게 추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산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목 제거 사업이 아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만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정부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1항에 보시면 ‘피해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목 제거사업’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산림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 동의드리고요.

이게 인명 피해나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대통령령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127페이지하고 정부의견 5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은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해서 산림경영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견 6페이지를 보시면 이달희 의원님 안이나 의원님들 안 4항에 보면 산림 경영특구로 선정된 경우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품목이 79개 품목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청장님, 이것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 이 차이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경영특구라는 것은 산림을 이용해서 임산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하는 조항인데요. 이게 박 의원님, 이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제시한 안으로 하게 되면 임산물이 아닌 다른 품목인데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문구상.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임업·산촌 진흥촉진법하고 관련된 산림자원법 모두 임산물과 관련된 것들이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정이……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청장님, 보면 이게 시행규칙으로 돼 있지요,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이게 79개 품목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러면 사과 같으면 사과 자체의 피해는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감이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과나무에 대한 부분, 감나무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열매 관련된 것도 있고 나무도……

○**서천호 위원** 나무와 열매가 분리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나무의 유실수 같은 경우에 열매가 열려 있으면 나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나무도 목재 관련된 것은 임산물 지원 품목에서 빠져 있고요. 목재류·토석류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다른, 오미자라든지 오갈피라든지 산수유나무라든지……

○**서천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산불 피해지역이 과수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과라든지 또 감, 포도는 조금 별개지만 그런 경우에 나무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정확하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경영특구라는 것은 산지에서 재배되는 임산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산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수 농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품목으로 넣기는 좀 부적절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하시는 사과나 그런 특산품 같은 농산품은 또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제가 이 4항이 들어간 이유도……

청장님, 산사과 드셔 보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달희 위원 우리 청송도 그렇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사과들이 산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산이 좀 시원하기 때문에. 산에서 키우는 산사과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산물로 쳐야 됩니까, 이런 경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밑에서 과수원 하다가 점점 사과가 부실하고 당도가 떨어지니까 자꾸만 산속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 이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나 감나무, 경남 같은 경우는 산에 심어 놓은 사과나무·감나무 피해보상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서는 79개 항목 안에 사과나무가 안 들어가는 것……

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건 어찌 보면 과실이니까 보상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어디에다 가르마를 타서…… 보상은 해 줘야 되는데 산속에 과수원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기후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현행법에서는 저희들은 산지에서 키우건 어디서 키우든 간에 품목 기준으로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임산물.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되는 조건이라든지 절차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사과만 계속 키워 가지고 산림경영특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돼 버리면 그것은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 틀하고 실제 내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과나 배나 이런 다른 농산물 피해는 산림경영특구가 아닌 다른 데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농림부에서 나오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예.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이달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산지에 과원을 조성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가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예를 들면……

○김형동 위원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 얘기……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예를 들면 저희가 곶감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에서 자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뾰은감 같은 경우도 임산물이지만 저희가 농업인이 농지에서 뾰은감을 재배해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조항은 사실은 저도 이해하기에는 산지에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사실 농지에서 생산되는 아까 말씀드린 뾰은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림청이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지금

핵심인데요. 이것을……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사실 지금 산림청도 그렇고 농림식품부도 그렇고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또 관련 규정도 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피해보상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안을 제시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양 부처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우리 위원회 때 보고를 받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서천호 위원님은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산림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적인 예가 산지에서 산림경영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게 피해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체사업을 지원하거나 할 때 이런 콘텐츠로 하는 건데.

○소위원장 임미애 예, 지원하는 것.

○산림청장 임상섭 산지에서 산림경영특구라고 지정을 해서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산림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사과는 산지에서 키우는 임산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또 지원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 농산물을 키울 때에 이것을 산림경영특구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가 지원해 주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경영특구라는 틀에서 그것을 다루기가 저희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사과를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굳이 닫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열어 놓고, 정부의견에 이게 산림청 의견인지 모르겠는데 79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 품목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검토…… 이게 충분히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79개가 그러면 절대적 기준입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특히 산불 난 지역에 아마 기준의 어떤 임산물을 그대로 재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대부분 79개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것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뭐랄까 임산물 재배하는 종류를 바꿨을 때까지 예상한다면 열어 둬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그것을 열어 놓으면 자기들이 또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더 많은 임산물을 다양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굳이 이달희 의원님이 제안한 4항을 이 같은 이유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그러한 이유로 4항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소위원장 임미애 박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지금 임업진흥법에 79개 품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정현 위원 이 79개 품목은 언제 정해져 있던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이 기준을……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작물 형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 79개 품목만을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다음번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산림청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소위 자료 1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의견 7페이지입니다.

이 의원님들 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안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정부의견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산림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 조문상 1호·2호·3호·4호·5호 이렇게 호로 하는 것은 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북특별법도 이런 특례에 관련된 조항들을 12개 조문으로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당되는 각 개별 법률의 조항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문으로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번 소위 때까지 안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일곱 번째 꼽지입니다.

130페이지하고 정부의견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안은 공동영농을 통한 기계화·규모화를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봤을 때 공동영농모델이라는 법조문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부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수정의견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수정의견인데 ‘공동영농모델’을 ‘공동영농조직’으로 바꾸고 ‘공동영농조직’을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건 농림부에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예, 공동영농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델이라는 표현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상을 구체화하자는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명칭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도 그 조직이 갖추어야 될 요건을 현재 농어업경영체법에서도 공동농업경영체라는 부분에 대한 요건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게, 지금 경영체 육성법에 보면 저희가 1호·2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1호 같은 경우에, 27조의3제2항 1호가 조직 운영계획, 농지의 공동 이용계획 같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고 2호는 비용이라든지 이익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1호·2호·3호의 내용들이 충분히 공동영농조직의 요건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내용을 구체화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수정의견 받으셨는데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담긴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위원 그냥 궁금해서 하나만……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다른 법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모델을 조직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공동영농조직. 이게 우리 특별법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그렇습니다.

○김형동 위원 다른 법에 있다면 그 법에 있는 용어를 가져와도 좋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다른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업경영체법에 공동농업경영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만 거기의 요건은 사실상 논농업 중심으로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면접 기준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라든지 지자체랑 거기서도 열심히 공동영농조직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밭농업에 있어서는 논농업 정도의 규모화를 이루는 공동영농조직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2항 2호에 대통령령으로 따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법에서 정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여덟 번째입니다.

131페이지하고 정부의견 10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31페이지 우측에 있는 검토의견 쪽 구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의원님들 안은 산림회복·활용, 지자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피해지역 개발의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 산림회복·활용하는 재원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지역의 보조금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고 반환의무를 면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역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딱 3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회복·활용을 위해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것, 이 세 꼭지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보조금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산림청장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는 앞에 자구 정리나 산림재해를 재난으로 바꾸는 것, 산악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자구 정리라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형수 의원님 33조에 있는 3항·4항·5항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안의 59조에 있는 3항·4항 이것 두 개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또 보조금 복구비 반환의무 면제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보조금법에서 용도 외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게 있어서 상충이 되고 있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반환의무라는 게 위법하게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를 받은 데는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면제규정을 이렇게 둔 거라서 이것은 기존 법률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삭제 의견은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각 부처별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피해지역 개발 용도지역 제한 완화는 국토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구를 넘어서서 재건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제2항에 따르면 들어설 수 있는 시설들에 공장이나 균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기존에 있는 전체적인 지역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이라서 저희는 좀……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기반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반쳐 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있는 계획들이 기반시설들을 전제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전체 다?

○소위원장 임미애 2항.

○박정현 위원 저도 정부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이 특별법은 사실은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에 있는 거지 이것이 새롭게 개발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이 조문을 뜯어 보면 한 조에 같이 담길 수 있을까라는, 조문 자체 안에 회복 및 활용 이렇게 제목은 돼 있지만 1·2·3호나 4호까지, 5호에 있는 관광이나 레저 9호에 있는 레포츠 대회 이런 부분이 저는 혼재돼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의 자연스러운 회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춘 것 같고 뒤엣것은 재건이라는 부분에 맞춘 것 같아서 조문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안에 통일성이라 그럴까요, 방향이 다른 부분이 들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법이 추구하는 한계 범위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 조문에 담을 수 있을지 또 아예 그 성격을 재건, 기존의 복원이 아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관광·레저 그다음에 산림레포츠까지 포함하는 이런 조문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좀 다듬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산불지역에 제대로 된…… 그냥 정부 돈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제도개선 부분도 제안할지도 모르겠는데 국토부나 아마 이쪽에서 제일 큰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용도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지목 같은 것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 곧장 이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 한 번 더 숙고 내지 정부의견을 꼼꼼히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토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애초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논의했던 부분하고도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지금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형수 의원님이나 이만희 의원님안에 담겨져 있는 32조, 58조의 내용 중에 1항은 문구 수정 정도이고요. 2항과 3항에 대한 전면적인 삭제가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3조, 59조는 부분적으로 이게 수용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님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불이 번져서 한 지역의 한 마을만 탔으면 사실 이런 특별법도 필요 없고 보상해 주고 복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마을이 아니고 경북 같은 경우 한 5개의 시군이, 그리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거의 이 부분은 재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복구, 원상 회복 정도로 하면 그냥 여기는, 시군 불난 데는 아예 없어지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을 좀 살려야 우리 남아 있는 데가…… 지방을 살리는 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처럼 지금 지방 살리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서 이것은 정말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산림청에서도 여기 나와 있던 모든 부서들이, 환경부에서조차도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재건의 샘플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넘어졌을 때 쉬어 간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난 불도 아니고 이 불은 정말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겪은 불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재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행안부도 국토부도 모든 부서가 나서서 지원을 하는데 특히 농식품부는 농민들 농기구 피해 11종목밖에 안 됐는데 35가지 종목을 피해보상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11종목…… 아까 79개 종목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변하고 이렇게 환경이 변했는데 청장님도 언제 정했는지 모르는 품목 가지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임산물이고 이것은 산림경영단지에 들어와야 될 품목이고 아니고, 여기서 논하는 것은 참 의미가 없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것처럼 정말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그 광활하게 탄 불난 곳이 내 땅이라면, 이게 우리 지역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짹 정리해서 새로운 타운으로 한번 만들…… 거기에 대규모 스마트팜 할, 그런 투자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 부처가 새로운 지방 살리는 모델을 여기에서 한번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국토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은 복원, 그냥 나무 심고 30년 40년 지나면 숲 우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번 이 부분은 김형동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형동 위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지금의 서울의 두 배 내지 두 배 반이 탔는데요. 이게 좀 논리라 그럴까, 접근하는 방식이 정부가 또 나무 심어 가지고 목초지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 회복으로 가 가지고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그만큼 재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개, 어떤 개발 모델을 접근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해 보자 또는 개인 산이지만 이렇게 어떤 부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산불 난 지역을 마을을 재조성하는 부분도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산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더라도 그대로 놔둬 가지고 이게 복원되는 시간이나 돈 이것보다 생각을 좀 바꿔서, 물론 무지막지한 개발 논리를 집어넣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 흔히 말하는 자본이 들어와야 이게 선행 복구가 빨리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국가가 그대로 복원을 먼저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이게 하세월이다라는 취지의 말씀 드리고.

워낙 많이 탔기 때문에, 여의도 면적 정도 탔으면 그거야 뭐 별개의 문제지만 서울의 2배가 넘는 곳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 조문에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 보자는 방향성도 있는데 우리 지금 특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목적 중에 오늘 논의되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부처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백 년 동안 산골에 살았는데 산불 났는데 다시 산이 필요 없어요. 길도 내야 되고 아까 무리하게 숙박시설을 곧장 넣는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 탄 지역을 목초지로 조성해서 목장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내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 부분은……

○박정현 위원 저도…… 위원장님!

○소위원장 임미애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꼭 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조문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특별법, 법의 취지가 재난이 났고 그래서 그 재난이 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삶터를 복원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우선되고 이 특별법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산림이라는 게 탄소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불이 난 산림을 산림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발의 토지로 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다른 대형 산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지금 산림이 국유지보다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법이 잘못 해석되면 안 그래도 산림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소유주들에게 오히려 저희가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위원장님, 산업부에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입니다.

박형수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피해지역 산림 회복과 활용과 관련된 내용 중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방안이 있는데요. 이건 우려 사항이 좀 있어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립니다.

산불 피해지역이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도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번에 이 내용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아홉 번째 꼭지입니다.

133페이지와 정부의견 13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크게 3개의 꼭지로 제안을 하신 건데요. 산림소득 분야에 융자 또는 보조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송이 등 임산물 채취 불가능한 지역에 보상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세 꼭지인데 정부에서는 두 꼭지는 인정을 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삭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제1항에 있는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8조로만 돼 있는 거를 관련 조항을 더 넣은 거고요. ‘보조사업뿐만 아니고 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형수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2항하고 3항은 채취업과 관련된, 특히 송이·능이·수액 같은 채취업에 관련된 지원 품목 보상금 보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번에 이미 관련된 집행이 다 됐고 현재 이 조항을 넣어도 지금 이 특별법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견의 제3항에서 지급대상자, 공익직불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행된 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이건 질문인데요. 피해를 입은 지급 대상 산지에 대한 복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복구를 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목을 산주가 처리해라고 하는 게 지금 산림청 아닌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러니까 목재 생산을 하시는 분이 직불금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산불이 나 가지고 더 이상 목재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직불금을 그 명목으로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활동, 목재 생산업을 다시 복구하든지 다른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원하고자 하는 게 이 조항인데, 저희들도 그걸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여기에서 ‘피해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조건들을 하셔야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계속 직불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조림과 육묘의 경우 서로 달라

서 이 경우는 받고 이 경우는 못 받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 상황인데…… 취지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직불금에 이 제한을 두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나무를 키우시다가 산불이 나서 복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계속 방치된 상태로 놔뒀는데 그거를 목재 생산 목적으로 직불금을 계속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들이 충족이 되시면 복구라든지 계속 목재 생산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구나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직불금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2항 삭제는 송이 피해액이나 수액 피해액을 전부 배상했다는 겁니까? 원래……

○산림청장 임상섭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 근거는요? 개인들한테 다 보상을 하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들이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24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이달희 위원 가구당 배상을 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넣어도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런데 이게 2인 가구 기준으로 240만 원이 나갔다는 건 이거는 뭐라 그럴까, 채취 임산물을 주 소득원으로 갖고 있었던 임업인들에게는 이 채취 임산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내지는 지원이다라고 말하기에 매우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달희 위원 이게 임산물은, 송이가 한 번 이렇게 불이 나서 안 나기 시작하면 몇 년 있어야 나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불이 나고 나서 다시 송이가 자연 발생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한 30년 넘어야 될 걸요?

○산림청장 임상섭 30년 내지 50년 정도……

○이달희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시법인데 이 조문을 넣어 놓고 계속 보상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시적으로 한 번 120만 원씩 2인 가구 줬다고 끝이면……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송이가 당장 안 나기 때문에 대체 소득 작물 조성하는 비용 그 예산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30년, 50년 동안은 계속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표고를 키우신다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 하실 수 있도록 대체작물 지원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걸 말씀드리면 채취하는 거라서 채취 지역이 피해가 나면 또 다른 채취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 가지고 조금 정보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들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하셨던 피해 금액을 채취업의 경우에

는 연장해서 죽 산정하는 게 조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른 위원님들…… 예.

○**서천호 위원** 청장님, 이게 특별 위로금까지 이미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대체작물 조성사업비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2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예, 103억 돼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조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피해조사 완료가 다 됐나요? 송이라든지 완료가 다 된 겁니까? 피해 금액이 산출이 됐어요, 개인별로?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 지금 보상이 된 건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현재 그러면 임업 농가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산림청장 임상섭** 개인적으로 제가 송이 채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북 지역의 임업 인들 많이 봤는데요. 송이 채취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현지 상황을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텐데 피해조사가 충분히 됐고 또 그에 상응하는 피해 금액이 보전이 됐다면 이 조항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피해조사가 다 충분히 됐을까, 또 그에 상응하는 피해 금액이 보전이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2항 부분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살려도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피해조사도 끝났고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전이 됐다면, 또 개중에 아직 피해 신고가 안 됐다든지 충분히 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이 규정의 2항을 그대로 살리는 부분으로, 이달희 의원님 안입니다.

2항을 살리더라도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이건 산림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다음 소위 때 다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취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중의견을 드렸던 것은 이게 실무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난법상 66조 1항에 있는 피해지원 항목에 채취 임산물이라든지 임산물 소득원이 없다 보니까, 송이 같은 경우는 위낙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공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다 보니까 대체작물 조성비라든지 특별위로금을 특별 사례로 추경까지 예산을 얹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른 채취 임산물이라든지 임업소득 작품은 이게 채취 임산물이다 보니까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에는 아직은 절차나 기준 같은 게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채취 임산물의 경우 사실은 다들 산림조합을 통해서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농가가 해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이것을 우리가, 산불이지 않습니까? 산불과 관련돼서 특별한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 특별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부처에서 의논을 하시고요. 다음번에 이 내용을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방안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형동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전문위원 황충연 마지막입니다.

이 법안은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정비·개발에 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 안이 총 27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의견을 전전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일단 산림청장님 의견 주시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정부의견 42조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 밑줄 그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의견 추가로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산림이 국유림하고 공유림, 사유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넣었고요.

1호 같은 경우에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모든 산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산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그리고 이달희 의원님의 5호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는 위임사항이 아니고 허가기준 완화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49조 특례로 옮겨서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것 안은 다음번에 주기로 하신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은 그다음은 다 되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리고 7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유림 경영·관리 관련 사항은 산림청장이 직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은 여기에서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8호·9호는 아마 국토부, 농식품부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국토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국토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8조, 9조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어쨌든 단일 지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인근 주변 지자체까지 같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보는 측면이 그런 겁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변 지역까지 다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행 유지, 저희 기준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농림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박형수 의원님 안 9호와 이달희 의원님 안 6호·7호에 대해서 농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법과 이번 산불특별법의 취지들을 충분히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산림 투자선도지구에 한해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다만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각종 지구들이 16개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열일곱 번째로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어떨까, 이 법에 담기보다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3에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 거기에 담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일단 다 듣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이면 오늘 누가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문체부에서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문체부 관광개발과장 이승재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의 지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단지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제안사항이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그 정도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미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장 이승재** 예, 문체부장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환경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김태오** 환경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모범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재난복구 관련해서는 대폭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개정이 있었고 올 2월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 지역은 직접 집행을 안 해 오다 보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협행법으로도 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작년 수해복구 사업들 데이터를 보니까 협의하는 데 평균 6일 정도 해서 의견이 바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완료가 안 되더라도 협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이면 이건 행안부인가요?

○행정안전부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예,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제외를 이달희 의원님께서 올려 주셨는데요. 저희가 재해영향 평가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 같은 게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해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찾아서 미리 조정하거나 아니면 방지책을 강구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피해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대상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권한 위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통해서 시도,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협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군구 단체장들이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인 실익이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다음은 이달희 의원님 안의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국토부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도시계획의 가장 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개발 가능 지역이 명시가 되고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금 그런 체계인데 이 제정안은 개발 가능한 지역과 관계없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다른 조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반시설 문제나 난개발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다음 15호도 얘기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다음, 지역개발법 관련입니다.

이것은 7조하고 8조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면제를 하는 건데요. 7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의견청취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토지수용이라든지 행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는 유사·중복사업이 없는지를 거르는 목적이기 때문에 면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죽 의견 주시지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그다음에 16번 도시재생법 관련입니다. 특별재생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인데요.

원래 특별재생제도가 생긴 게 2017년 포항 지진 때 처음 생겼고 이번 산불피해지역에 두 번째 적용이 됐습니다. 이미 2017년 그 당시 새로 제도가 들어올 때 관련 절차를 꿩

장히 간소화해서 그때 기존 법제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생사업이라는 게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제일 상위 계획으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특별재생계획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가 돼 있고요. 지자체단에서는 공청회라든지 지방의회 심의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이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간소화 부분은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 정우진 예, 이미 더 줄일 절차가 없습니다.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재생계획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경관법입니다.

경관법은 어차피 국가가 주도하는 일부 공공건축물 외에는 다 지자체장이 이미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별로 실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건축법 관련인데요.

임시주거용조립주택의 일반건축물 전환 시 설계도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임시조립주택이야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소화된 절차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전환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건축물 안전이나 이런 기능 측면에서 사전에 검토 한번 없이 그냥 바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19호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 안전이라는 게, 어쨌든 기존의 건축허가제도라는 것이 건축물 안전을 다 보는 건데 기존의 체계를 너무 많이 훌트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번입니다.

건축법 43조에 따른 공개공지의 확보 기준 완화인데요. 이미 지금 지자체 조례로 완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21번입니다. 건축법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입니다.

이것도 이미 지자체장에게 연장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삭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인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임미애 예.

○산림청장 임상섭 박형수 의원님 안 2항하고 3항이 있고 이달희 의원님의 4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 권한들을 조례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다시 재위임하는 권한 위임인데 이달희 의원님 안의 3항에 이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박형수 의원님의 2개 조항하고 이달희 의원님의 마지막 조항은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

을 것 같아서, 포함되는 내용 같아서 삭제 의견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그다음에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건데 일단 특례에 대해서 대체로 삭제 의견이 들어와서요,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실익이 없는 조항들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달희 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예, 제가 경제부지사를 해서 산업부하고 일을 주로 했는데요 국토부의 가로막힘에 우리 산업 현장이 고충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문제인데, 전 세계가 환경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더 이상 할 시설이 없습니다. 고로 를 수소환원제철소를 만들지 않고는 제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때립니다, 환경 기준 강화하라고.

그러면 토지가 필요한데 해양을 매립해서 하겠다, 국토부 승인입니다. 국토부는 열심히 쫓아다녀 보니까 사무관 바뀌어서 또 1년 지나고 또 그 사무관 바뀌어서 또 지나고.

국토부가 지금까지 국장님 나오셔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공허하고 너무나 쓸데없는 트랙들이라는 것이 말씀하실 때마다 밑줄이 그어집니다, 현장에 있었던 거를 생각하면.

포스코의 해양매립 산업단지 승인 났습니까, 40만 평? 우리 제철 환경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철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산업부는 애가 탑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속이 마릅니다,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는 무능한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기는 위원회 없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을 그냥 그 위험, 사지로 내몰기 위한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부처가 모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정해 주십시오. 이 법에 복구만 담을 게 아니고 이참에 재건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지방 살리기의 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주시면 또 여러 경험이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모여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도와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혹시 다른……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형동 위원** 산불지역에 산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거는 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여기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김형동 위원** 협의를 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형동 위원** 현재 지정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없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고요. 이번 특별법에서 산림 투자선

도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시면 거기에 그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김형동 위원** 만약에 지자체에서 올라왔는데 청장님의 하나도 허용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거는 이미 전북특별법하고 강원특별법에 이러한 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 이게 행정의 전반을 다 알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망라가 돼 있는데.

저 뒷자리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오셨을 수 있는데, 경북도에서 오셨지요? 경북도에서 오신 분 없으세요?

○**경상북도기획조정실장 김호진** 예.

○**김형동 위원** 계시잖아요. 앉으세요.

아마 정부에서 몇 분들이 ‘이거 기존의 법률안에 있다, 기존에 이미 풀려져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말도 못 하고 속이 막 타들어 갈 것 같습니다.

권한을 과감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길, 산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물론 산림청장이 계시지만 산불이 왜 났고 바람꼴이 어떻게 흘러가고 들짐승이 어디로 다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지요. 자연보호는 여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라는 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지요.

아까 난개발에 대한 주의점 박정현 위원님 말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도권에는 그린벨트를 다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난개발이지요.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된 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산림청장님께, 이것 뭐 위성으로 찍든지 아니면 그때 보니까 드론이 아주 장비가 좋던데 전체적으로 좀 바둑판처럼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그대로의 복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다 여기 소멸지역 넣어 놨는데요.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어떤 개발에 대한 유인을 주면서 적절하게 환경 보존까지 겸해 가는 방식을 써야지 아까 제가 답 들어 보면서, 저 뒤에 계시는 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가균형발전도 이번에 꼭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경상북도 북부의 절반이 됐어요. 여기서 더 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동네 조금 탄 것, 앞산 탄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권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거는 주겠다, 이거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야지 이거는 이미 다 줘 놨다, 이미 줘 놨는데 답답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법률안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 있는 거 몰라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에 넣은 것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 그럴까 접근 방식이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을 많이 누비는 산림청장님 정도는 제 말씀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산림청에다 권한 좀 많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중앙정부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 산불 났는데 그 지역에 산불이 왜 났는지 물난리가

왜 났는지 하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제일 많이 아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기초까지 가는 거는 무리라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

특별도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도 사실 특별도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북부만큼은 가장 잘 살았던 동네 중의 하나였는데 가장 망했지 않습니까? 전북도, 강원도 특별도 다 만들었잖아요, 제주도도 만들고. 대한민국 전체 특별도 만들어도 아무 이상,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아까 보니까 몇 개 권한을 줬다고 또 적어 놨더라고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어느 수준의, 이 특별법을 만드니까 적극적으로 권한을 넘겨서 중앙정부의 짐도 더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또 특별법 발의의 취지가 어쩌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소위 이전에 국토부와 또 경상북도와 그리고 발의해 주신 관심 있으신 의원님 몇 분과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한 번 더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법안소위에서 다시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달희 위원 마지막으로……

○소위원장 임미애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달희 위원 산림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정의나 앞으로 이게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기회균형발전특구, 특구가 워낙 많은…… 부처마다 막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방의 특색을 살려 주기 위해서 그런 특구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개념으로 지자체하고 이 그림을 그리셨는지를 다른 부처에다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여기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모습으로 개발을, 재건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처와의 공동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를 한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동 위원 마치기 전에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예.

○김형동 위원 지금 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침에 위원장께서 미국대사관 앞에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산불지역이 어떻게 보면 내일모레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두 배, 세 배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난 지역이 대부분 사과, 과수 농사가 많고 그다음에 소도 많이 키우고 또 쌀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많은 분들이, 중추 역할 하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국회에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데 남은 기간만이라도 농민들 그다음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이달희 이원택 임미애

○청가 위원(1인)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충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직무대리 강혜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태오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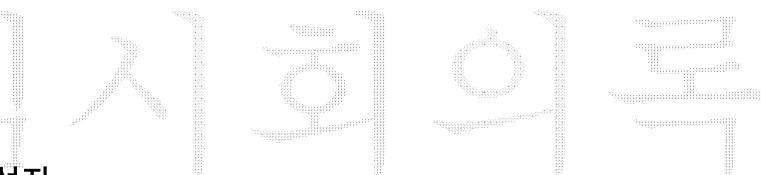
도시정책관 정우진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임시회의록